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286
----------	------

발의연월일 : 2012. 6. 13.

발 의 자 : 나정숙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이 만들어지고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 도심속의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직접생산하고 생태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되살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 도시생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
- 라.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마.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조)
- 바.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델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불임참고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논의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를 통해 안산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도시생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유기순환농법에 따른 시민들의 자율적인 농사행위로, 생태적인 녹색공간 확보,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공동체 의식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생태농업”이란 유기순환농법으로 자연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재활용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5. “텃밭농장”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6.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피복, 무농약(화학살균·화학살충·제초제) 및 지역 순환형 거름과 자가 제조 거름 등을 이용한 자원순환 유기농법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는 등 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생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생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시생태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생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1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생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위원 : 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도시생태농업 관련 전문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대표, 도시농업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면,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

제1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생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4. 도시생태농업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텃밭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을 이용한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 ① 시,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텃밭 등의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26일

제 출 자 : 경제사회위원회

1. 수정이유

- 도시농업 자체가 친환경 농업의 의미를 담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제명을 도시농업으로 수정하고 또한 유기순환농법에 따라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도시생태농업에서 도시농업을 변경하며, 이하 도시생태농업의 용어를 도시농업으로 수정함.
- 기본이념에서 유기순환농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
- 정의에서 도시농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유기순환농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조)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명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유기순환농법에 따른”을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같은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5조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같은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생계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호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도시농업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를 제12조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중 “도시생계농업”을 “도시농업”으로 한다.

제14조(도시텃밭의 지정 등)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를 제14조로 한다.

제16조(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를 제16조로 한다.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u>	<u>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도시생태농업 활성화</u> 를 통해 안산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u>도시농업</u> _____ _____ _____ _____.
제2조(기본이념) <u>도시생태농업</u> 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유기순환농법에 따른 시민들의 자율적인 농사행위로, 생태적인 녹색공간 확보,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공동체 의식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도시농업 _____ _____ <삭> 제> _____ _____ _____ _____.
제3조(정의) 1. “ <u>도시생태농업</u> ”이란 유기순환농법으로 자연 생태적인 원리를 존중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 <u>도시농업인</u> ”이란 「 <u>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5. (생략)	제3조(정의) 1. “ <u>도시농업</u> ”이란 「 <u>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_____ 법 _____ _____ _____ 3. ~ 5. (원안과 같음)

<p>6.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피복, 무농약 (화학살균·화학살충·제초제) 및 지역 순환형 거름과 자가 제조 거름 등을 이용한 자원 순환 유기농법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p>	<p>6. <삭 제></p>
<p>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u>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 ----- -----, <u>도시농업</u>-----</p>
<p>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는 등 <u>도시생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 ----- -----, <u>도시농업</u>-----</p>
<p>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u>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u>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u> 3. <u>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u> 4. <u>도시생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u> 5. <u>도시생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u> 6. <u>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u>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u>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u> 	<p>제6조(계획의 수립) ① ----- -----, <u>도시농업</u>----- -----. ② ----- -----. 1. (원안과 같음) 2. <u>도시농업</u>----- 3. <u>도시농업</u>----- 4. <u>도시농업</u>----- 5. <u>도시농업</u>----- 6. <u>도시농업</u>----- 7. (원안과 같음) 8. ----- <u>도시농업</u>-----</p>

<p>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p> <p>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도시생태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안산시도시생태농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1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생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 ④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위촉직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도시생태 농업 관련 전문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대표, 도시농업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p>⑤ ~ ⑥ (생략)</p>	<p>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 도시농업 ----- ----- <u>안산시도시농업위원회</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삭 제> 4. 도시농업 ----- <p>-----</p> 5. (원안과 같음) <p>② ~ ④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 <u>도시농</u> 업 ----- <p>-----</p> <p>⑤ ~ ⑥ (원안과 같음)</p>
<p>제9조(회의 등)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9조(회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p>	<p>제12조 <삭 제></p>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 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생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 도시농업

-----.

1. 도시농업 -----

3. 토발농장의 지원사업 4. 도시생태농업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략)	3. (원안과 같음) 4. 도시농업 ----- 5. ----- 도시농업 ----- ----- ② (원안과 같음)
제14조(도시텃밭의 지정 등) (생략)	제13조(도시텃밭의 지정 등) (원안과 같음)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생략)	제14조(상자텃밭의 보급) (원안과 같음)
제16조(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생략)	제15조(기술의 교류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원안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